

학생의

학교을 명위원회 참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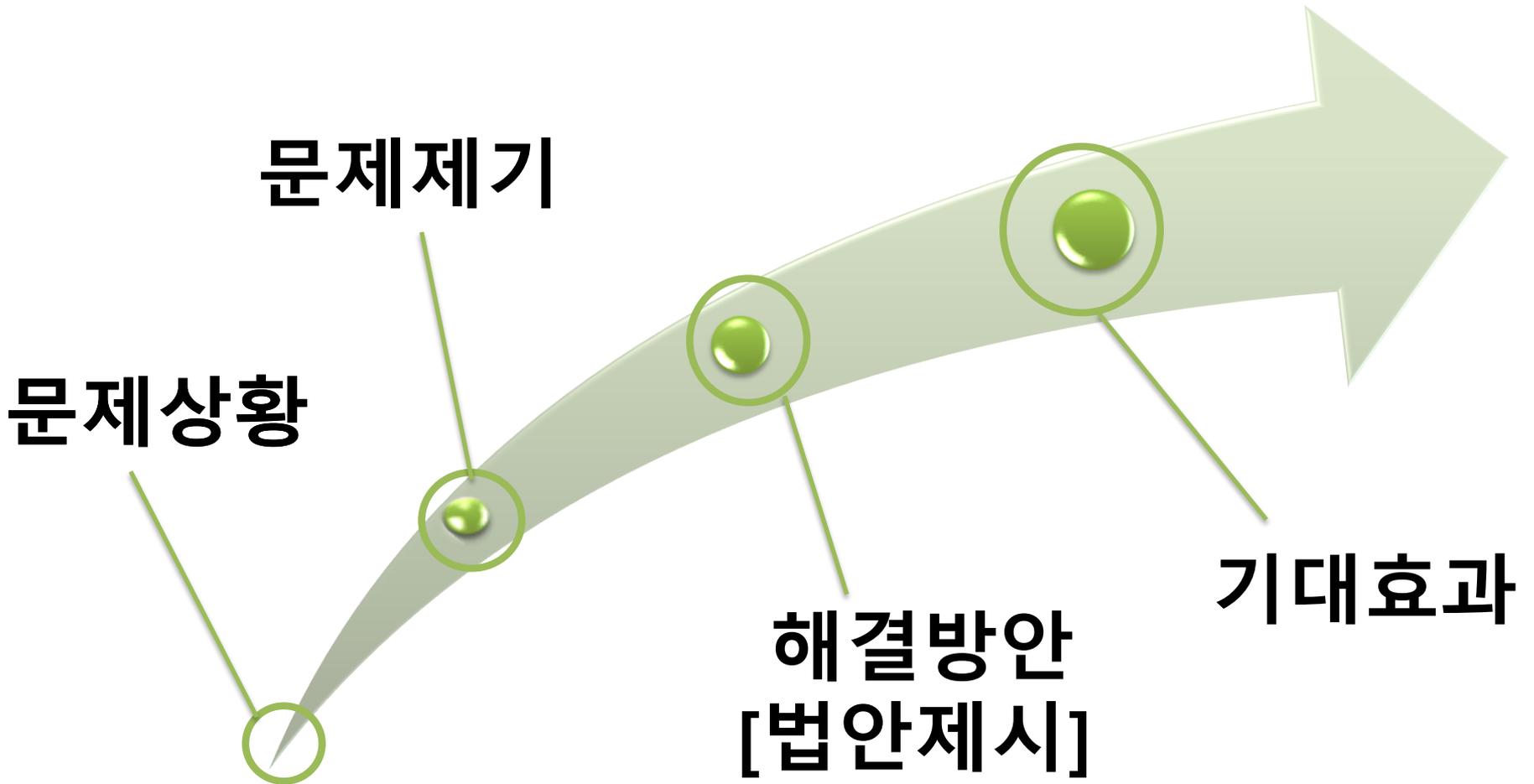
및

학교을 위 진행방침 제.가.경



학생자치위원회
정민주, 구선형, 주민하
김진우, 김형준, 김나윤
송어진, 김윤희

목 차



'희망의 학교' 학생들은 설문조사 결과 91%의 학생들이 "학생자치와 학운위 참여를 원하고 있다"며 "학교의 주체인 학생에게 운영위 참여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"이라고 비판했다.

청소년들은 학교문열위원회에서 학생 대표가 발언권을 갖는 경우는 전체의 12.1%에 불과하고, 참여는 하되 발언권이 없는 사례(7.1%)도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.

우리도 자치하고 싶어요

대다수는 학생회조차 무시
인권조례 시행에도 반영안돼
경기도교육청 초중고 설문
'학교 민주적 문화' 요구 많아

**문제
상황**

문제제기

학교운영위원회

교육 소비자의 요구 체계적 반영
→ 개방적, 투명한 학교의 운영

그러나

문제제기

학생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

학생 발언권 보장 X

+

학생자치활동
여건 열악

학생의견이 가장크게
반영되어야 하는,

초·중·등
교육법 모순

해결방안

따라서

학생대표단
학·운·위 출석

학생들을
직접 대변

학생 의견
반영 도움

→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효과적인
활동 및 의견 반영을 위해서는 법안의 구체화 필요

이에 따른 초·중·등 교육법
제 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 31조 개정을 요구

법안 개정 제시

「초중등 교육법」 제 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 31조
(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)

-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국립·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, 학생 대표단,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. (개정)

'학생대표단'을 추가

법안 제정 제시 - 1

제 32조 (기능)

① 국립·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...

3항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

4항.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

5항.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

6항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
...중략

10항. 학교급식

12항.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

13항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
...이하생략

▶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때
학생생활에 관련된 안건인 3항,4항,6항,10항
12항,13항으로 활동범위를 제한한다. (제정)

법안 제정 제시 - 2

제34조(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)

-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
- ③ 공정하고 투명한 회의를 위해 안건과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에 모두 게시한다. (제정)

기대효과

학교에 학생의견
효과적 반영

학교와 학생간의
절충안 확립가능



학교와 학생간의
소통원활

학생인권보장
+
학교발전에 기여

기타효과

- 학생의 존엄성 및 자주성 향상
-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칙 제정 가능
- 학생들의 교내 여러 문제에 대한 불만감소

보다 향상된
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위해
노력하겠습니다



Thank you